
2022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(ATC+) 신규 공고 관련 주요 FAQ

2022. 1.

1. 게시 사항

Version	게시일	게시(수정,보완) 내용	페이지
1	2022.01.07.	주요 FAQ 게시	-

<기본 사항>

1. 신규과제 접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어디로 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2022 ATC+ 공고 관련 문의처- <u>온라인 시스템 접수 관련</u>은 R&D 상담콜센터(☎1544-6633)- <u>과제 관련</u> 문의사항은 융합신산업팀(☎053-718-8345, 8362, 8361)- <u>R&D 샌드박스</u> 문의사항은 전략기획팀(☎042-712-9111)
-----	---

2. 지원분야 관련, '산업기술 R&D 투자전략 분야(5개영역, 25대분야)' 세부 추진체계에 부합해야만 지원 가능한가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동 사업은 산업부 산업기술 R&D 투자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이므로 상기 분야에 부합해야 합니다.○ <u>부합여부는 첨부자료를 바탕으로</u> <u>평가위원회(연구개발과제평가단)에서 판단합니다.</u>
-----	--

3. 과제 기간은 반드시 4년이어야 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연구범위, 내용에 따라 기간을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합니다.○ 다만, 공고시 제시한 예산과 지원기간에 맞추어 신청할 것을 권장하나, 과제기간을 단축하더라도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.
-----	--

4. 기존 ATC 또는 월드클래스 사업을 수행했으며, 현재 해당 과제들이 종료된 상태인데, ATC+에 지원 가능한가요?

답 변	○ 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 없이, ATC 또는 월드클래스 300 R&D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선정된 이력이 있으면 ATC+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.			
	국내 산학연 개방협력(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은 WC300만 불가)			
	ATC/WC300		ATC+ 신청유형	
	선정 시 참여유형			
	주관연구개발기관	→	공동연구개발기관	가능
	공동연구개발기관	→	주관연구개발기관	가능
공동연구개발기관	→	공동연구개발기관	가능	
주관연구개발기관	→	주관연구개발기관	불가능	

5. 사단법인 단체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가요?

답 변	○ 연구기능이 있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,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장에 대한 신용조회를 진행할 예정임 - 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’ 서식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
-----	--

6. 신청요건의 연구전담요원 8~30인과 참여연구자 기준은?

답 변	○ 신청요건의 8~30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 內 ‘연구전담요원’만 산정 ○ 다만, 실질적으로 기업부설연구기관장과 연구보조원도 연구에 참여하므로, 참여연구자로 과제 참여 가능
-----	--

7. 과제 2개 이상 신청 가능한가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동 사업의 지원유형 중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과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신청한 경우에는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자격은 상실됩니다. ○ 같은 유형에 2개 이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신청한 경우 과제번호가 가장 빠른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신청자격은 상실됩니다. ○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하나, 3책5공 등 제한조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--	--

8. 해외 MOU 서식이 있습니까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MOU 작성 양식은 따로 없으며,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자유양식으로 협약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. ○ 다만, 형식적 요건(각 기관대표의 서명)을 갖추고, 공동연구 범위, 교류계획, 성과 공유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-----------	---

<연구개발비 편성 관련>

9. 1차년도 개발기간만 9개월인데 해당연도 신청금액을 조정해야 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개발기간에 상관없이 1~4차년도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.* e.g. 1차년도 5억원, 2~4차년도 각 5억원(국내 산학연 개방협력)
-----	---

10. '주관연구개발기관 60%이상 배정'이 무슨 말인가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예를 들어 컨소시엄 전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신청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에 3억원 이상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동연구개발기관/해외기관에 배정하여야 합니다.
-----	--

11. R&D 집약도 상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현재(공고일 기준) 작성 서식 배포가 안 되어 산정방식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해당 내용은 작년(2021년)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12. 최소(의무) 편성 인건비 비중(45%)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해당연도 컨소시엄 전체의 인건비(학생인건비 및 현금, 현물 포함)에서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*를 나눈 비율이 각 연도별로 45% 이상 되어야 합니다.* 해당연도 컨소시엄 전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의 합
-----	--

13.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편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답 변

- 각 연구개발기관(수행기관)별로 각 연차마다 해당 비율로 편성
-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은 '22년 한시 적용되는 선택사항이며, '23년 이후는 기본사항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.

연구개발기관 유형	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(기본사항)	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(선택사항, '22년 한시 적용 가능)
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% 이하	
중견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% 이하
중소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% 이하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% 이하
그 외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	

연구개발기관 유형	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	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
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60% 이상	
중견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중소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40% 이상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수요기업인 공동연구개발 기관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40% 이상	
그 외	필요시 부담	

※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(300백만원)을 받는 경우 예시(기본사항 기준 예시, 코로나 특별지침 선택 시 비율 상이)

-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 : 300백만원 / 67 * 33
= 148백만원(반올림) 이상 책정
-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) : (결정된 ① 금액) * 0.4 이상 책정
-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물) : ① - ②
- ④ 해당연도(연차) 연구개발비
= 정부지원연구개발비 +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



<R&D 샌드박스 관련>

14. R&D 샌드박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기관만 신규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&D 샌드박스 신청자격은 과제 지원자격이 아닙니다. 즉, R&D 샌드박스 신청자격이 없는 기관도 신규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 * R&D샌드박스는 수행기관이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단계에서 R&D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로, 과제 신청자격과 무관합니다.
-----	--

15. 과제 신청 시 R&D 샌드박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? 미 신청 시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&D 샌드박스 신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택 사항입니다. 또한, R&D 샌드박스는 선정 평가 가점 또는 감점 대상이 아니므로, R&D 샌드박스 신청 여부가 과제의 평가 및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----	--

16. R&D 샌드박스 신청요건(최근 5년간 최종평가 결과 우수 등)은 타부처 사업의 우수성과도 해당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우수성과만 해당되며, 이외 부처 사업의 결과는 R&D 샌드박스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----	---

17. 과제 선정 후 R&D 샌드박스를 따로 신청할 수 없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만 R&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과제에 선정된 이후에는, R&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----	--

18. 과제신청 시 R&D 샌드박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<u>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R&D샌드박스 신청여부만 선택</u>하고, <u>과제에 선정된 이후에 산업기술R&D정보포털(itech)에 샌드박스 심의를 위한 서류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</u>하셔야 합니다. <p>* 과제 선정 확정통보 시 별도 안내 예정</p>
-----	---

19. 공동연구개발기관도 R&D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가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<u>R&D 샌드박스는 과제 단위로 적용</u>되므로,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<u>공동연구개발기관 또한 R&D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</u>받을 수 있습니다.
-----	---

<재무제표 제출 관련>

20. R&D 집약도 관련 2년치 재무제표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, 제출서류 목록에는 3개년도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. 어느게 맞는건가요?

답 변	○ R&D 집약도뿐만 아니라 한계기업 여부(최근 3개년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) 등을 검토하기 위해 3개년치 모두 필요합니다.
-----	--

21. 기존과 달리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는 온라인 재무정보 시스템으로 제출만 하면 되나요?

답 변	○ 과거 신규과제 접수 시 영리기관(상장사 제외)은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제출과 재무상태표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제출서류 간소화 제도개선 차원에서 도입하였습니다. -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에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완료하시면 됩니다. * https://www.findsystem.co.kr/fs/FSDSI05R1.pop?instCd=78 - 상장사(거래소, 코스닥)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제출 필요 없음(이미 신용정보기관에 DB화가 되어 있음)
-----	---

22. 기존 신용정보기관(Ked)를 이용 중이며,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. 연계하여 DB를 활용 하나요?

답 변	○ 해당 시스템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 공고의 신청 자격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기관(Ked)와 MOU를 통해 도입되었으며 신용정보기관(Ked) DB를 연계하여 활용합니다. - 수행중인 연구개발기관의 약84%가 이미 직전년도 3년 결산자료 (2018, 2019, 2020) 재무정보에 대하여 Ked에 등록 중으로 확인됨
-----	--

23. 기존 신용정보기관(Ked)과 DB를 연계하여 재무정보를 활용한다면, 기존 DB를 보유하여 제출이 불필요한 기관과 DB미보유로 제출이 필요한 기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과제신청 과정에서 재무정보가 조회가능하며, 상세내용은 확인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조회가 되지 않는 영리기관이 있다면, 신청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안내하여 해당기관이 find시스템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미조회되는 연도의 결산 정보 또는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여 정보가 상이한 기관은 find 시스템으로 제출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(확인방법) https://itech.keit.re.kr > 로그인 > 연구과제수행 > 신규과제신청 > 2단계 > 기관 및 인력 > 기관정보 입력 > 재무정보 > 기관별 한국기업데이터(KED) 데이터 조회가능 여부 확인 ※ 조회가 되지 않는 기관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제출 - https://www.findsystem.co.kr/fs/FSDSI05R1.pop?instCd=78
-----	---

24. 과제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.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접수 기간내에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, 전문기관 담당자의 사전검토기간에 제출서류 보완 요청에 불응할 경우 제출서류 미흡으로 평가 상정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. - 과제접수기간 내에 제출을 못한 경우, 전문기관 담당자의 사전검토기간까지 find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
-----	--

25.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활용을 미희망 하는 기관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답 변	<p>○ 미희망 경우에는 신규 공고에 대한 전문기관의 신규 과제 접수 완료 후 사전검토기간 동안에 과제담당자가 소명요청 안내드릴 예정이오며, 소명 요청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)을 업로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* (업로드 방법) https://stella.keit.re.kr > 로그인 > 소명요청</p>
------------	---